

청주 흥덕 칸타빌 더뉴 입주자모집공고



-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청주 흥덕 칸타빌 더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건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건본주택 홈페이지(www.hd-cantavil.co.kr)를 통해 분양 일정 및 청약 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hd-cantavil.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검수 및 정당계약 기간에는 당첨자(계약자)외 건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됩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2.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3.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4.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 37.5도 넘을 경우
 5. 기타 [방역당국 및] 사업 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한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청주 흥덕 칸타빌 더뉴 고객센터(043-233-163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착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흥덕 칸타빌 더뉴 주요사항

「주택법」제 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 세대 1순위 자격 부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4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주시 거주자 우선
---	--	---

- 공급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82-1 일원
- 공급 대상 : 총 334세대 중 조합원 185세대 제외한 일반분양 : 149세대 [전용면적 59A㎡: 37세대, 59B㎡: 34세대, 74㎡: 60세대, 84㎡: 18세대]
- 입주 시기 : 2025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모집 공고 : 2022. 07. 15(금)입니다.
- 건본주택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2길 9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KB 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 KEY)	네이버 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	○	○	○	○
APT 무순위 / 잔여 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 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공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으로서 구실을 함에 따라 중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전화상담실(1644-7445)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 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 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전화상담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 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 접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만 해당)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계약 체결)
		기관추천·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1순위			
일 정	2022.07.15(금)	2022.07.25(월)	2022.07.26(화)	2022.07.27(수)		22.08.02(화)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2022.08.4(목) ~ 2022.8.10(수)	2022.08.16(화) ~ 2022.08.18(목)
방 법	분양홈페이지 등 게재	인터넷청약 (09:00~17:30)	인터넷청약 (09:00~17:30)			개별조회	건본주택 방문 접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2길 9) (10:00~17:00)	건본주택 방문 접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2길 9) (10:00~17: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분양홈페이지 www.hd-cantavil.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 은행 구분 없음 ※ 은행 창구 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방문 접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접수일 내 제출서류 등 당첨자의 제반 서류는 홈페이지(www.hd-cantavil.co.kr)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및 서류접수/계약체결 방식 등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접수 및 추천 일정, 방법 등은 추후 통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방문 계약체결 ※ 일반인 입장 불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건본주택 내 방문 청약은 불가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때에만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하면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 모바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때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를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15.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의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충청북도 및 청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 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의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 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 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 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하면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분양권 등이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 호의 2)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 565호, 2018.12.11))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할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한(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 7호의 3에 의거 “소형, 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 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면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예시)	처리결과	비 고
특별공급 당첨(청약자) + 특별공급 당첨(세대원)	모두 부적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특별공급 당첨(청약자)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세대원)	특별공급 부적격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추천참여 불가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특별공급 당첨(청약자) + 특별공급 신청 후 낙첨(세대원)	특별공급 당첨자 부적격(※세대원이 청약신청 이력으로 당첨자 부적격)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 청약)로 선정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 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 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혼인신고일로부터 시행일 이전(시행일:18.12.11)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 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21.11.16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 최초 특별공급(전용 85㎡ 이하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20%, 민간택지는 10%)이 적용됩니다.
- 2021.11.16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 중 30%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청약자와 기존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포함하여 추첨 물량(30%)에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구 분	추첨제(공급물량의 30%)	기 준	신청가능 주택형(타입)	비 고
신혼부부	소득초과+부동산자산기준 충족(3.31억)	소득초과(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초과) + 부동산자산기준충족(3.31억)	59A/B , 74 , 84	
생애최초	소득초과+부동산자산기준 충족(3.31억)	공급신청자가 혼인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포함한 자. * 1인 가구 ① 공급신청자가 혼인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주민등록표상 미혼인 자녀도 없는 자. ② 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인 자.(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자)	59A/B , 74 , 84	소득기준70%(기준/상위소득)낙첨된 자 와 포함하여 추첨.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청약불가 합니다. [단 59타입만 신청가능]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됩니다.
- 2020.11.1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9877」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 1호를 적용하여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2020.11.1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9877」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제9호 적용여부 판단기준이 “전체 면적·소형자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소형자가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특별공급은 주택수의 300퍼센트, 일반공급은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d-cantavil.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 된 예비 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 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제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10%) 완납 이후에 전매가 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한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입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수분양자 등은 직접납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는 수도권 외 비 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분양권 등), 대출유무 등에 따른 대출금용기관의 대출실행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 등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 당시와 향후, 금융정책 규제의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요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점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급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 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주택과 - 24041호 (2022.07.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82-1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22층, 4개동 총 334세대 중 일반공급 149세대(조합원: 185세대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149세대 : 특별공급 75세대, 일반공급 74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 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m ²)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 타 공 용 면 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등	소계													
민 영	2022000480	01	59.9755	59A	59.9755	19.1649	79.1404	34.8554	113.9958	38.3839	37	3	7	4	1	4	19	18	1	2025년 1월
		02	59.9861	59B	59.9861	19.6320	79.6181	34.8615	114.4797	38.3907	34	3	6	3	1	2	15	19	2	
		03	74.6957	74	74.6957	23.3080	98.0037	43.4101	141.4139	47.8048	60	6	12	6	2	6	32	28	2	
		04	84.8504	84	84.8504	26.2754	111.1258	49.3116	160.4374	54.3037	18	2	4	1	0	2	9	9	1	
	합계											149	14	29	14	4	14	75	74	6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표기	동별	공급 세대수	층	분양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공급대금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2.11.15		2023.03.15	2023.07.15	2023.11.15	2024.03.15	2024.07.15	입주시	
59A (59.9755)	102동 (4호) 103동 (2호)	37	1	28,694,000	203,526,000	232,220,000	23,222,000	23,222,000	23,222,000	23,222,000	23,222,000	23,222,000	23,222,000	23,222,000	69,666,000
			2	28,694,000	211,266,000	239,960,000	23,996,000	23,996,000	23,996,000	23,996,000	23,996,000	23,996,000	23,996,000	23,996,000	71,988,000
			3	28,694,000	219,006,000	247,700,000	24,770,000	24,770,000	24,770,000	24,770,000	24,770,000	24,770,000	24,770,000	24,770,000	74,310,000
			4	28,694,000	221,586,000	250,280,000	25,028,000	25,028,000	25,028,000	25,028,000	25,028,000	25,028,000	25,028,000	25,028,000	75,084,000
			5~9	28,694,000	224,166,000	252,860,000	25,286,000	25,286,000	25,286,000	25,286,000	25,286,000	25,286,000	25,286,000	25,286,000	75,858,000
10~22	28,694,000	229,326,000	258,020,000	25,802,000	25,802,000	25,802,000	25,802,000	25,802,000	25,802,000	25,802,000	25,802,000	77,406,000			
59B (59.9861)	103동 (3,4호)	34	1	28,573,000	200,367,000	228,940,000	22,894,000	22,894,000	22,894,000	22,894,000	22,894,000	22,894,000	22,894,000	22,894,000	68,682,000
			2	28,573,000	208,007,000	236,580,000	23,658,000	23,658,000	23,658,000	23,658,000	23,658,000	23,658,000	23,658,000	23,658,000	70,974,000
			3	28,573,000	215,637,000	244,210,000	24,421,000	24,421,000	24,421,000	24,421,000	24,421,000	24,421,000	24,421,000	24,421,000	73,263,000
			4	28,573,000	218,177,000	246,750,000	24,675,000	24,675,000	24,675,000	24,675,000	24,675,000	24,675,000	24,675,000	24,675,000	74,025,000
			5~9	28,573,000	220,727,000	249,300,000	24,930,000	24,930,000	24,930,000	24,930,000	24,930,000	24,930,000	24,930,000	24,930,000	74,790,000
10~17	28,573,000	225,807,000	254,380,000	25,438,000	25,438,000	25,438,000	25,438,000	25,438,000	25,438,000	25,438,000	25,438,000	76,314,000			
74 (74.6957)	101동 (2,3호)	44	1	35,445,000	255,085,000	290,530,000	29,053,000	29,053,000	29,053,000	29,053,000	29,053,000	29,053,000	29,053,000	29,053,000	87,159,000
			2	35,445,000	264,765,000	300,210,000	30,021,000	30,021,000	30,021,000	30,021,000	30,021,000	30,021,000	30,021,000	30,021,000	90,063,000
			3	35,445,000	274,455,000	309,90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30,990,000	92,970,000
			4	35,445,000	277,685,000	313,130,000	31,313,000	31,313,000	31,313,000	31,313,000	31,313,000	31,313,000	31,313,000	31,313,000	93,939,000
			5~9	35,445,000	280,905,000	316,350,000	31,635,000	31,635,000	31,635,000	31,635,000	31,635,000	31,635,000	31,635,000	31,635,000	94,905,000
			10~22	35,445,000	287,365,000	322,810,000	32,281,000	32,281,000	32,281,000	32,281,000	32,281,000	32,281,000	32,281,000	32,281,000	96,843,000
84 (84.8504)	104동 (4호)	18	3	35,445,000	258,955,000	294,400,000	29,440,000	29,440,000	29,440,000	29,440,000	29,440,000	29,440,000	29,440,000	29,440,000	88,320,000
			4	35,445,000	262,025,000	297,470,000	29,747,000	29,747,000	29,747,000	29,747,000	29,747,000	29,747,000	29,747,000	29,747,000	89,241,000
			5~9	35,445,000	265,095,000	300,540,000	30,054,000	30,054,000	30,054,000	30,054,000	30,054,000	30,054,000	30,054,000	30,054,000	90,162,000
			10~18	35,445,000	271,225,000	306,670,000	30,667,000	30,667,000	30,667,000	30,667,000	30,667,000	30,667,000	30,667,000	30,667,000	92,001,000
84 (84.8504)	104동 (4호)	18	1	40,203,000	295,947,000	336,150,000	33,615,000	33,615,000	33,615,000	33,615,000	33,615,000	33,615,000	33,615,000	33,615,000	100,845,000
			2	40,203,000	307,157,000	347,360,000	34,736,000	34,736,000	34,736,000	34,736,000	34,736,000	34,736,000	34,736,000	34,736,000	104,208,000
			3	40,203,000	318,357,000	358,560,000	35,856,000	35,856,000	35,856,000	35,856,000	35,856,000	35,856,000	35,856,000	35,856,000	107,568,000
			4	40,203,000	322,097,000	362,300,000	36,230,000	36,230,000	36,230,000	36,230,000	36,230,000	36,230,000	36,230,000	36,230,000	108,690,000
			5~9	40,203,000	325,827,000	366,030,000	36,603,000	36,603,000	36,603,000	36,603,000	36,603,000	36,603,000	36,603,000	36,603,000	109,809,000
10~18	40,203,000	333,297,000	373,50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37,350,000	112,050,000			

※ 상기 각 회차 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공통사항

- 본 주택의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층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함)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래 추가품목 사항에 명기함.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선택 품목은 수 분양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추가 선택품목 중 유상옵션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 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 으로서 상기 공급 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며, 단지 내 공동주택과 별도의 대지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 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소수 5째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미신청자 또는 대출 불가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 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람에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함.
 - 견본주택은 74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외 미건립 타입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재당첨 제한되는 주택은 1순위 등 청약유예를 받을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이며, 입주 시 관리운영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전시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방법	특별공급 유형	신청방법	비 고
인터넷 청약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청약홈"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은행창구 접수 불가. 견본주택(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한함) ※ 견본주택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2길9	기관추천	① 해당 관계기관에 주택형별 신청 ② 해당 관계기관에서 우선순위 선정 ③ 사업주체 추천명단 통보 ④ 해당 관계기관에 선정된 신청자 인터넷 청약접수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생애최초·노부모부양	인터넷 청약접수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74	84	합계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	0	0	1	0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0	1	0	2
	10년이상 장기 복무군인	1	0	1	1	3
	중소기업 근로자	1	1	2	0	4
	장애인	1	1	1	1	4
	소계	4	2	6	2	1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3	6	2	14	
신혼부부 특별공급	7	6	12	4	29	
생애최초 특별공급	4	3	6	1	14	
노부모 특별공급	1	1	2	0	4	
합계	19	15	32	9	7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36조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p>1회 한정 / 신청자격 요건/자격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 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더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선정 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p>무주택요건 및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 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p>중복당첨 처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역(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처리방법(배우자 세대분리 포함) <table border="1" data-bbox="392 619 2040 1157">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중복유형</th> <th>본인+본인</th> <th>본인 + 세대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td> <td rowspan="2">동일 주택공급 단지</td> <td>특별공급+특별공급</td> <td>불가능한 사례(청약홈 알림메세지) ※일반공급 + 일반공급 포함</td> <td>모두 부적격 (특별공급1회 제한)</td> </tr> <tr> <td>특별공급+일반공급</td> <td>특별공급 당첨인정 (일반공급 무효)</td> <td>모두 인정</td> </tr> <tr> <td rowspan="2">다른 주택공급 단지</td> <td>특별공급+특별공급</td> <td>둘 다 무효 (청약홈 알림메세지)</td> <td>모두 부적격 (특별공급1회 제한)</td> </tr> <tr> <td>특별공급+일반공급</td> <td>둘 다 무효 (청약홈 알림메세지)</td> <td rowspan="2">둘 다 인정</td> </tr> <tr> <td></td> <td>일반공급+일반공급</td> <td>둘 다 무효 (청약홈 알림메세지)</td> </tr> <tr> <td rowspan="3">당첨자 발표일 다른 경우</td> <td>선당첨</td> <td>후당첨</td> <td>선당첨(특별공급) 인정 ※특별(통장)+특별(통장)=후 당첨 무효</td> <td rowspan="2">특별 1회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td> </tr> <tr> <td>특별공급</td> <td>특별공급</td> <td>특별(통장)+특별(미통장)= 후 당첨 부적격</td> </tr> <tr> <td>특별공급</td> <td>일반공급</td> <td>선당첨(특별공급)인정 ※특별(통장)+1순위=1순위무효 특별(미통장)+1순위= 둘 다 인정</td> <td>둘 다 인정</td> </tr> </tbody> </table> <p>※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같은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일이 동일함.</p>	구분	중복유형		본인+본인	본인 + 세대원	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	동일 주택공급 단지	특별공급+특별공급	불가능한 사례(청약홈 알림메세지) ※일반공급 + 일반공급 포함	모두 부적격 (특별공급1회 제한)	특별공급+일반공급	특별공급 당첨인정 (일반공급 무효)	모두 인정	다른 주택공급 단지	특별공급+특별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 알림메세지)	모두 부적격 (특별공급1회 제한)	특별공급+일반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 알림메세지)	둘 다 인정		일반공급+일반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 알림메세지)	당첨자 발표일 다른 경우	선당첨	후당첨	선당첨(특별공급) 인정 ※특별(통장)+특별(통장)=후 당첨 무효	특별 1회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통장)+특별(미통장)= 후 당첨 부적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선당첨(특별공급)인정 ※특별(통장)+1순위=1순위무효 특별(미통장)+1순위= 둘 다 인정	둘 다 인정
구분	중복유형		본인+본인	본인 + 세대원																																
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	동일 주택공급 단지	특별공급+특별공급	불가능한 사례(청약홈 알림메세지) ※일반공급 + 일반공급 포함	모두 부적격 (특별공급1회 제한)																																
		특별공급+일반공급	특별공급 당첨인정 (일반공급 무효)	모두 인정																																
	다른 주택공급 단지	특별공급+특별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 알림메세지)	모두 부적격 (특별공급1회 제한)																																
		특별공급+일반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 알림메세지)	둘 다 인정																																
	일반공급+일반공급	둘 다 무효 (청약홈 알림메세지)																																		
당첨자 발표일 다른 경우	선당첨	후당첨	선당첨(특별공급) 인정 ※특별(통장)+특별(통장)=후 당첨 무효	특별 1회 제한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통장)+특별(미통장)= 후 당첨 부적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선당첨(특별공급)인정 ※특별(통장)+1순위=1순위무효 특별(미통장)+1순위= 둘 다 인정	둘 다 인정																																
<p>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함.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으로 부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복당첨 처리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로 선정 된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불가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은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한명이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견본주택 접수를 우선시 함.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방문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또한, 공급 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공급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적격 처리 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중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시 만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p>청약자격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하며, 제36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함.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호보상대상자 등 청약통장 필요없음)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① 청약예금: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시기 바람.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그 밖의 광역시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 당하는(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특별공급 공통사항 청약자격 조건 내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중소기업근로자,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 ②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등: 충북남부보훈지청 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④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 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 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 하시기 바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및 청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병상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이상(태아나 입양아를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청주시)에게 우선공급 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순위로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격요건 : [특별공급 공통사항 청약자격 조건 내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이혼·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p> <p>① 임신의 경우: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p>	<p>① 미성년 자녀수(태어나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p>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주택에 한정함)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이상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4)	20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공급신청자가 성년인 만 19세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 기간부터 산정) 단,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을 산정 함.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인 만 19세부터(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그 기간부터 산정) 해당 지역(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경기·서울·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 배우자의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 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및 청주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갖추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청약 자격요건 : 특별공급 공통사항 청약자격 조건 내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①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종교기간(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부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 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③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④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으로 인정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⑥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 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소형저가 주택 등) 1호 또는 1세대를 제외한,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먼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제곱미터 이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소유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이외 주택소유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 방법.

■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및 「민법」 제 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 신고일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자녀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자녀 신혼부부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 완료에 한함)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이상 경과한 신혼부부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청주시)에게 우선공급 함.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미성년자녀수 포함.
 -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구분 (70%)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및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소득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를 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초과 및 자산기준 충족되는 추첨제(30%) 공급물량에 기준소득 및 상위소득기준에 청약신청하여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원)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 [성년인자 (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자산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요청을 접수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기준지역 세대주 등으로 표기 및 전년도 소득이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이 없으며 무직자인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소득산정 기준일을 적용함) • 근로소득기간 내 출산휴가를 받았을 경우: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제출 하여야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단, 출산휴가 신청자는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출산휴가기간 및 소득은 제외하며, 재직증명서 등 출산휴가 기간이 표시된 자료 등 회사직인이 날인된 서류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신규 개인사업자 등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민연금보험 가입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상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 및 사업 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전 "매출액 합계-매입액 합계")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과거 직장 해촉 또는 경력증명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으로 정상적인 근무 개월 수로 소득을 산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직장의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p>※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 또는 부가가치세 등 해당 서류발급이 불가한 경우 특별공급 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p>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및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대한 소득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 신고 등 포함)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및 청주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에 해당(제53조 9호는 제외)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제 19조 또는 제 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신청한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구분(청약자 기준)	소득세 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과거 5개년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한 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② 과거 5개년도 이상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한자

※ 과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배제함.

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음.

-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인자(만19세 이상) 전원의 소득을 포함]이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이하인 자. (※ 표) 참조)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가구원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혼인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세대구성을 포함한(공급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청주시)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 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

구분	공급유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구분 (70%)	우선공급 (기준소득 :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 20%)	130%초과~160%이하	8,071,615원~9,934,294원	9,361,053원~11,521,294원	9,523,895원~11,721,715원	10,113,774원~12,447,720원	10,703,652원~13,173,725원	11,293,531원~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및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가구 (※단독세대는 제외)	160% 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원) * (N-8), 100%기준} ※N→ 9인 이상 가구원수

- ※ 소득기준초과 및 자산기준 충족되는 추첨제(30%) 공급물량에 기준소득 및 상위소득기준에 청약신청하여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함.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가구원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함.
- ※ 가구원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포함되지 않음)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봄
- ※ 당 사업지는 전용 60㎡이하 주택형 59A, B타입으로 1인 가구(단독세대 등)도 청약신청 가능함.
-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생애 최초 자산 기준표

- 자산기준 : 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p> <p>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및 청주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 도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p> <p>※ 무주택 세대주일 것.</p> <p>※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p>※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p>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p>※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소형.저가주택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청주시)에게 우선공급 함.</p> <p>당첨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표2〕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p>
-----------------------	--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가능하나 중복당첨될 경우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일반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및 청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이외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여도 청주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p>
청약신청 유의사항	<p>-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단, 만60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함).</p>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 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일반공급 청약 예치 기준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관련 [별표2]

구 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그 밖의 광역시	서울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의 1

구분	내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 주택 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 제외 - 만18세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공급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 신청자가 충청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할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 경우
 - ※ (현재 : 무주택자) 중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Ⅲ.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등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2.07.25(월) (청약Home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10:00~14:00)	■ 인터넷 청약 (청약홈) -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2.07.26.(화)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07.27.(수)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 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 ② 금융인증서
-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자격을 판단하여 입력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세대구성원 동의」⇒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p align="center">인감증명 방식</p> <p align="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 해야 함.

IV.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서류검수 일정, 구비서류 등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일반/특공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8.02(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8.04.(목) ~08.10(수) 7일간 (10:00~17:00) 장소 : 사업주체 건본주택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2길9)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계약 체결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준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8.02(화) ~ 2022.8.11.(수)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8.0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추첨, 계약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미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검수하여야 하며, 검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추첨 참여 기회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동서류	○		①특별공급신청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제출 •특별공급신청서의 경우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③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④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⑤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⑥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⑦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⑧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⑨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	⑩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⑪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⑫무주택계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①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일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③입양 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	④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⑥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직 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⑦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⑧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②임신증명서류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③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④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⑤ 소득증빙 서류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⑦ 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
		○	⑧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⑨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을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①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③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④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⑥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⑦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설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③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소득증빙 서류 (소득증빙서류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⑤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⑥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
		○	⑦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⑧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소득세납부증빙서류 참고)	본인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제3자 대리인신청 추가사항	○		①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대리인 신분증, 인장	본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5.)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상기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않는자 (건강보험증상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분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 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2개서류 모두제출	①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납부 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2개서류 모두제출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1)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자산보유시

구분	부동산소유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 해당관련 서류
①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부동산자산이 있거나, 없거나 해당 페이지 스크린 샷 인쇄. ※ 공동인증서 등 반드시 필요.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거래은행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열람하기 > 해당물건지 주소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자산이 없어도 발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알리미 (www.realtyprice.kr)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 또는 개별 주택가격)또는 재산세과세 내역서 (해당시군구청 발급)
②주택외 오피스텔,상가등 건축물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부동산자산이 있거나, 없거나 해당페이지 스크린 샷 인쇄. ※ 공동인증서 등 반드시 필요.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거래은행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열람하기 > 해당물건지 주소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자산이 없어도 발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과세 내역서 (해당시군구청 발급)
③토지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부동산자산이 있거나, 없거나 해당 페이지 스크린 샷 인쇄. ※ 공동인증서 등 반드시 필요.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거래은행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열람하기 > 해당물건지 주소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자산이 없어도 발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토지) ※ 정부24(공동인증서) 또는 주민 센터(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①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②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국내 거주기간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⑧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⑨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⑩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예비 당첨자		○	①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③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④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⑥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⑦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대리인 신분증,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①해당주택에 대한소명 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 ·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7.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자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V.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등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2022.8.16(화)~2022.8.18.(목) 3일간, 10:00~17:00	사업주체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2길 9)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계약 체결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계약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③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④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⑤ 적격여부 확인 증빙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5.) 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잔금	농협	355-0080-2725-53	코리아신탁(주)

- ※ 상기 분양대금 납부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 계좌 (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701호 계약자 → '1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 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는 향후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은행명 및 계좌번호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서류접수 기한 내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는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 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 유무 및 자산 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5.(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 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습니다.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 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2)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3)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4)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이종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 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해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6개월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20. 2. 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 주체나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될 때는 변경 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체결계약 때,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심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모두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내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입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 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될 때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 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② 전산관리 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북도 청주시)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총 공급 금액의 10%)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세무상 기타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주민도서관, 주민회의실 피트니스클럽 등), 주민운동시설(옥외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시니어클럽),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1~2개월 전까지 날짜를 지정 및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예정 월 : 2025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통보함)

- 공사 기간 단축 등으로 실입주 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낸 후 입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만 적용됨)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 도래한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선납할인은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만 적용되며, 입주 지정기간에는 할인으로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 납부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 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할 때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 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 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 일을 각각 통보하며, 또한 입주 지정기간은 500세대이상 단지는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됩니다.
- 추후 안내하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관리비, 세대 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 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동절기 입주시 세대 물 청소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 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내 입주세대는 입주개시당일이전까지, 입주지정기한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정일 당일까지 사전난방 관리가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키포출 세대는 키포출일 당일을 입주일로 간주하여 난방 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포출 세대 부담으로 함.)
- 입주시 시행 및 시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 (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음.

VI.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13,000,000	1,300,000	11,700,000
59B	13,000,000	1,300,000	11,700,000
74	17,000,000	1,700,000	15,300,000
84	18,000,000	1,800,000	16,200,000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 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장식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장식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시행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아파트의 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 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 가구, 선반 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때에만 계약 가능)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제조사 : LG 전자)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59A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3,900,000	390,000	3,51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6,800,000	680,000	6,120,000
59B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3,900,000	390,000	3,51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6,800,000	680,000	6,120,000
74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4,200,000	420,000	3,78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400,000	740,000	6,660,000
84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4,800,000	480,000	4,32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800,000	780,000	7,02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 세대는 기본 제공 3개소(거실, 주방, 침실1)인 매립형 냉매 배관 및 에어컨 실내 기용 전기 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실의 냉매 배관 및 전기 콘센트 설치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 청정 형 선택 시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거실, 침실1 냉매 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실내기 1대당 1개 제공)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통보함)

2) 가전제품 [주방가전]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냉장고	LG오브제 냉장고+김치냉장고+키큰장	59A	5,800,000	580,000	5,220,000
		59B	5,800,000	580,000	5,220,000
		74	5,800,000	580,000	5,220,000
		84	5,900,000	590,000	5,310,000
3구 인덕션	LG (BEI3GTBI)	59A, 59B 74, 84	1,100,000	110,000	990,000
식기세척기	LG (DUB22SB2)	74, 84	1,100,000	110,000	990,000

※ 59A, 59B 타입은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이 제한됩니다.

- 각 타입의 유상옵션 미선택에 따른 평면은 상이하나 기본형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타입별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시공상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 및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제공 의무 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 제공 의무 되는 제품의 비용은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타입별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타입 별 평면 형태에 따라 제품의 크기, 용량 등이 상이하니, 상세 내용은 분양자료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식기 세척기 미선택 시 가구장이 설치 됩니다.
- 59A, 59B 타입은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이 제한됩니다.
- 인덕션, 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 쿡탑이 기본 설치됩니다.
- 인덕션, 쿡탑 유상옵션 선택 시에는 가스 쿡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오브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공간 및 일부 상부장만 도어 및 톨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장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상이하므로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브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선택 시 가구 및 가전의 도어 여닫이 방향은 좌우세대 및 타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가구 및 마감재 (선택 유상옵션)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품목 및 위치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현관중문	3연동 도어현관중문	74, 84	1,900,000	190,000	1,710,000
거실/복도/주방 벽 마감 고급형	대형포세린타일(1200×600)아트월,벽 판넬 고급마감	59A	2,500,000	250,000	2,250,000
		59B	2,300,000	230,000	2,070,000
		74	2,700,000	270,000	2,430,000
		84	2,600,000	260,000	2,340,000
바닥타일 고급형	포세린타일(600×600)거실+주방+팬트리	59A	2,100,000	210,000	1,890,000
		59B	1,800,000	180,000	1,620,000
		74	2,400,000	240,000	2,160,000
		84	3,100,000	310,000	2,790,000
	포세린타일(600×600)거실+주방	84	2,700,000	270,000	2,430,000
팬트리	시스템선반+팬트리 도어	84	900,000	90,000	810,000
스타일 칸 키친	주방 상판, 벽+아일랜드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와이드 사각싱크볼+ 터치형 싱크수전	59A, 59B	2,700,000	270,000	2,430,000
		74	3,100,000	310,000	2,790,000
		84	3,500,000	350,000	3,150,000
스타일 칸 바스 (공용+부부욕실)	포인트타일,도기,수전,액세서리 샤워부스 고급형 변경	59A, 59B	3,800,000	380,000	3,420,000
		74, 84	3,900,000	390,000	3,510,000

- 견본주택 미건립 세대인 59A , 59B ,84 타입은 건립세대인 74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이 동일 하며, 평면 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전제품, 색상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분양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모든 자재는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신제품개발,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조명기구, 분전함, 콘센트, 설비 및 배선 기구류, 바닥배수, 환기급배기구, 수전류, 환 및 각종 점검구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주방, 침실장, 신발장, 욕실장 등)의 하부에는 타일, 마루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벽체/천장에는 벽지, 타일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소품류, 가구류, 집기류, 등에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모집공고 추가선택품목 외에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소품류, 가구류, 집기류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용입니다.
- 현재 견본주택은 유상옵션이 적용된 평면으로 기본형은 도면 및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일의 패턴 및 칼라는 생산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타일의 나누기도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바닥재, 벽지 류, 타일 류, 가구, 등 기구, 기기 류 및 기타 제품 등은 본 공사 시 동질, 동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59A, 59B 타입은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이 제한됩니다.
- 현관 중문 유상옵션 선택 시 중문의 특성상 완전 밀폐 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유상옵션 선택 시 신발장의 크기 및 디테일이 변경되며, 복도 벽의 마감이 기본(벽지)일 경우 프레임이 돌출됩니다.
- 현관 중문 유상옵션 미선택 시 신발장 내, 외부 형태 및 크기들이 변경되며 신발장 측면에는 가구 마감을 위한 벽체가 시공됩니다
- 포세린바닥 유상옵션 미 선택 시 거실, 주방, 복도가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거실, 복도, 주방 벽 고급형 마감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마감인 벽지로 시공됩니다.
- 스타일 칸 키친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의 상판+벽체, 싱크볼, 싱크 수전이 같이 적용됩니다.
- 스타일 칸 키친(주방 고급형)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의 상판은 인조대리석(MMA), 벽은 타일로 시공되며,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노출되고, 이음부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자재는 견본주택 및 분양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 칸 키친(주방 고급형)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의 싱크볼과 싱크수전이 상이하고 타입별 유상옵션의 싱크볼 사이즈가 상이하니 견본주택 및 분양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면기, 양변기, 수건걸이, 휴지걸이, 수전류는 유상 품목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제공 품목은 견본주택 및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욕실 장, 욕실 거울이 설치되는 뒷면은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과 바닥의 타일 나누기 간격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의 비배관 설치 공간 확보 등으로 천장 높이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 바닥의 단 차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의 점검구 및 환기팬의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의 약세서리, 수전, 배수구의 위치, 형태, 규격,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의 전기 배선 기구 및 콘센트의 위치 및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타일 칸 바스 유상 옵션 선택 시, 부부 욕실과 공용욕실이 같이 적용됩니다.
- 욕실의 포세린 타일 벽면, 고급형 도기와 수전, 고급형 샤워부스, 수건걸이 등이 반영된 스타일 칸 바스를 유상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스타일 칸 바스 유상옵션 미선택 시 포인트 타일 없으며, 양변기, 세면기, 수전, 수건걸이, 샤워부스 등의 사양 및 디자인이 기본형으로 변경 설치되며 견본주택 및 분양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공통사항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공사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 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	농협	355-0080-2725-53	코리아신탁(주)
추가 옵션 품목 납부 계좌	신한은행	140-011-163565	(주)대원디앤디

-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모두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 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 홍길동'
- 납부 주체가 당첨자(계약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되었으면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모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내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Ⅷ.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각종 홍보물은 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도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 현황(인접 APT 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배수펌프장,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철도, 단지 외부 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 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동쪽에 진입도로 맞은편 경사면이 있습니다. 또한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기반 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변전소, 고압 케이블, 배수펌프장 등),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여건상 사업지 주변 도로와 사업지간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 용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주변의 도로는 관청 주도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폭원, 레벨 값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 부지와 만나는 경계부에 대한 공사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설계변경 처리하며, 별도 입주민의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및 도색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자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 계획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상,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용승인 도서에 따르며, 이에 대해 사업 주체나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 성능, 제품의 사양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다른 점이 발생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특기사항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 주체 또는 사업 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대화 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존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 주체 또는 사업 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 해체 및 부속물(디지털 자물쇠/말발굽 등)의 임의 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 주체 또는 사업 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분양받은 사람(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사람(입주자)"이 유지나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비는 실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 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에 표현된 아파트 단지 주변 상황(축대벽, 도로, 철도, 근린공원, 주변 건물 등), 개발계획 예정도, 단지 인근 도로 완충 녹지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실제와 다르거나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단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 도서 작업) 과정 및 실 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 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 주근 규격, 배근 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최대지반가속도 0.207G 내진 능력등급 VII, 리히터 규모 6.0입니다.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 및 지층 성상 변동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사면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의 사면에 인접한 등의 경우 주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마감재, 사인물, 설치위치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해당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 및 경비실, 단지 내 D/A, 환기구,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의 형태, 디자인, 재질 및 마감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주변 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필로티 천정과 출입구 주변의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현된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문주에 의해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출입구에 인접한 동의 지하 주차장 차량 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옆벽 로고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의 구조물 및 옥상 난간 계획은 실시공시 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이미지와 형태, 규격, 마감,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의 구조물은 실시공시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로 시공될 수 있으며, 구조물 상부 노출면에는 도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 주차장의 기초구조는 흙 파기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구조는 PC 보, 기둥과 1방향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로 설계되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RC 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삽화(그림) 등과 견본주택의 단지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의 차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생활폐기물보관소는 주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배치상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 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보관소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도서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마감 사양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당사의 타 현장 및 타사 현장과의 비교를 통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외부 휴게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공간,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보관소, 관리동, 필로티, 선큰, 주차 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계부 단차 발생 시 외곽의 단차처리 방법 및 마감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및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물 등으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 및 선큰 공간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 사용 공간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차량동선, 산책로 등 동선과 놀이터, 운동공간 등 외부공간의 선형이나 마감재료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현장 현황 등에 따라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공간의 계획은 공용부분으로서 디자인 의도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구조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 조명 및 차량 진출입 시 헤드라이트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헨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의 의거, 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식재 및 저층세대 차폐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안전매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경우 필로티 옆 및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 내에 자전거보관소 및 휴게·놀이·운동시설물 등이 설치될 경우,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사생활

- 침해의 우려와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로티 위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옥상에는 설비시설(실외기, 송풍기 등) 및 식재/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주변 세대는 미관저해, 소음, 분진 및 냄새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는 경비실이 있는 주·부출입구 외에 단지 외부에서 진입 가능한 출입구가 있으며,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으니 확인 바랍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조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 (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인접세대는 실외기 및 탈취기 등의 기계설비 가동에 의한 소음, 악취, 미관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설비시설 환기를 위한 DA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소음, 및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및 덕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엘리베이터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되며, 가스정압기가 설치시 향후 가스 정압실의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고, 이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조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조기 운영은 당 아파트 단지의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도로폭등의 제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철도,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지 주변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 변경에 따라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단차구간 없는 평탄한 단지레벨로 계획되었으나, 단지내 도로 및 보행통로 일부에 경사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될 실외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제한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용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아파트 입주민, 근린생활시설 입주민 또는 사용자와 분리하여 사용되며, 주차장 구역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층에서는 각 동 하부 필로티 또는 각 동 출입구를 통해 동별로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구의 형태는 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시공되고,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호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2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레벨차로 인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 동별 지하 엘리베이터 홀과의 거리 및 동선 연결 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세대는 개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레벨차로 발생하는 단차부위의 입면디자인 및 개구부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은 인허가 관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 배치,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는 지상1층 지하주차장 램프 D.A 인근에 설치되며, 중계장치는 지하주차장 1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전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2개 층 중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지하1층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 부터 약 2.8미터, 램프 출입구는 약 2.6(보설치부위)~2.8(그외)미터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외 층(지하2층)의 높이는 약 2.75미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의 높이는 골조하단부터 바닥마감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며, 설비배관으로 인한 유효높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의 높이는 설비배관의 높이에 따라 위치별 상이할 수 있으며, 최소 유효높이는 위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휀룸,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정화조 등 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일부 동이 세대가 아닌 필로티 및 피트(PIT)공간 또는 부대시설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공간을 제외한 최저층을 저층우선 세대로 배정하였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동 저층부의 외부의 일정 높이까지는 석재로 마감되며, 주동 저층부와 연계된 동 출입구, 특화시설, 부대시설, 상가시설에는 별도의 마감 계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 내부 마감은 시공사의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여건 및 관계법에 따라 통로 폭 확보 등을 위해 마감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에 주차장이 존재함에 따라 지하 주차장 램프 인근, 지상 주차장 인근의 저층부 세대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가로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위의 사용은 사용검사 이후 입주자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안전상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옥상은 사용을 금합니다.

2. 단위세대 부분(공통)

- 본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가 바뀌어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배치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사업계획승인 기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면적 산정 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 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 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의 스팀 청소기 및 물 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다용도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출입문 사이즈로 인하여 최신 대형가전이 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유효폭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는 설계상 오류가 아님으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세탁기 및 건조기가 병렬 설치가 불가능하며, 보일러 위치에 따라 설치 위치가 고정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상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상호 스펙은 사업승인시 협의된 에너지 자료를 우선시 하며, 견본주택 내 설치된 스펙이 준공과정에서 인허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아닐 경우 스펙이 조율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며, 시공되는 스펙에 따라 변경되는 상호의 두께, 사이즈, 사양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 내 상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동선에 따라 세대 내 동 호수별로 대피공간과 실외기실 위치가 상이합니다.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 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 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으로 선택되는 바닥 타일의 경우 재료의 두께 차이로 인하여, 이질 재료와 만나는 부분의 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별 천정고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노출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상호 프레임은 외관 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 도어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상호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 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내기에서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상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 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로 소방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 위치 및 수량이 결정됩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주방 렌지 후드에는 소방 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 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 장 일부 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스 배관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가스 인입 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선반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환기 덕트는 노출배관 (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 및 탈취기 등의 기계설비 장비 설치로 인한 소음, 악취, 미관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DA 및 설비기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 환기팬, 온도조절기, 환기 디퓨저, 바닥 배수구의 제품 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 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대피 공간 (관련 규정에 근거)은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분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 환기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공사 시 대기전력차단 콘센트의 경우 법적 수량에 맞춰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 및 사용성에 따라 건본주택에 설치된 위치와 개소가 다르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 분전함, 스위치·콘센트 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건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안방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2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일부 구조에 따라 설치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들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동선에 따라 세대별 대피공간과 실외기실 위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 및 탈취기 등의 기계설비 장비 설치로 인한 소음, 악취, 미관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의 2 제3항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세대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설치 및 운영 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방식은 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회의 및 관리규약에 의해 정해질 예정이며, 시공자(주식회사 대원, 주식회사 대원 디앤디)와는 무관합니다.

4. 기타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의 요청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및 하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 입주 후 주변시설 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 편의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자(주식회사 대원) 및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시점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법상의 허용기준 이내의 증감의 경우 별도의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주택법상의 허용기준 이내의 증감의 경우 별도의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분양면적, 계약면적등은 소수점 4자리까지 정산하고 이후는 버림표기 합니다. 버림표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면적상의 오차는 부대 복리시설 및 공용부 면적으로 가감 처리합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 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 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6조제 1호에 의한 단열 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6조제 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6조제 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분설계기준 (제7조 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 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원포비스(주)	태일소방감리사무소	(주)해월엔지니어링
감리금액	1,016,778,400	340,615,799	44,000,000	176,000,000

■ 주차장 차로 및 입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약 6.2m~6.7m	지하1층 2.8m 지하2층 2.75m	램프 초입 2.8m 램프 끝단 2.6m

※ 표기된 높이는 설비배관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 바닥마감면에서 천정 마감면까지의 높이임.

※ 높이에 대한 기준은 위치별로 상이함에 따라 정확한 높이는 반드시 도면을 열람하여야 함.

※ 표기된 높이는 시공 과정에서 구조 및 시공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2-101-0008800	₩ 30,909,340,000-	입주자모집 신고수리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흥덕지역주택조합	(주)대원	(주)대원디앤디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4, 4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7, 1층(문화동, 센트럴칸타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7, 1층(문화동, 센트럴칸타빌)
법인등록번호	504-82-79908	315-81-01104	194-81-00833

청주 흥덕 칸타빌 더뉴	
	<p>■ 위치안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2길 9</p> <p>■ 운영기간: 2022.7.16.(토)~ 분양 종료시</p> <p>※ 분양 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서류접수 기간 후 상황에 따라 지정계약 전 일까지 견본주택 휴관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청주 흥덕 칸타빌 더뉴 홈페이지</p> <p>공식 홈페이지 (www.hd-cantavil.co.kr)</p>	<p>분양문의</p> <p>043) 233-1633</p>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 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p>청주 흥덕 칸타빌 더뉴</p>	<p>043-233-1633</p>	<p>59㎡~84㎡ 총 334세대 (일반분양 149세대)</p> <p>시행 :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p> <p>시공 : (주)대원, (주)대원디앤디</p>
---------------------	---------------------	--